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7.

발 의 자 : 강선우 · 임오경 · 박해철
김윤덕 · 서미화 · 진성준
조승래 · 임호선 · 윤호중
정태호 · 이수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. 이와 함께 개인 간병비용의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.

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, 간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환자 가족 등을 돌보며 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

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35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간병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간병에 관한 특례)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간병의 급여비용의 전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.

1. 고령 또는 장애, 정신 및 신체의 질병,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. 이하 “돌봄대상가족”이라 한다)에게 간호, 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
2. 34세 이전부터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, 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 중인 사람
3.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간호, 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돌봄대상가족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의료급여의 내용 등)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·부상·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7조(의료급여의 내용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8. 간병</u>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제10조의2(간병에 관한 특례)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간병의 급여비용의 전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.</u>
	<u>1. 고령 또는 장애, 정신 및 신체의 질병,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. 이하 “돌봄대상가족”이라 한다)에게 간호, 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</u>

	<u>4세 이하인 사람</u> <u>2. 34세 이전부터 돌봄대상가족</u> <u>에게 간호, 간병, 일상생활 관</u> <u>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</u> <u>하기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</u> <u>중인 사람</u> <u>3.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</u> <u>는 자가 간호, 간병, 일상생활</u> <u>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</u> <u>공하고 있는 돌봄대상가족</u>
--	---